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1. 제안이유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체계화하여 해당 조항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과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 정비로 구민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이용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안 제5조)

나.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준 비율별 체계화와 관련 용어 정비(안 제10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호)

마.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5. 4. 3. ~ 2025.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겹칠때에는 성북구”를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성북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지나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또는 할인”을 “전액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사: 전액”을 “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함): 전액”을 “한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북구체육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로, “체육행사: 전액”을 “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2. 100분의 50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다.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마.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체육관, 축구장·족

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3. 100분의 30

가.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증 소지자

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4. 100분의 20: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

5. 100분의 10

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6. 100분의 5

가. 장기 등록자(6개월 이상)

나.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

다.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공 문화체육시설 포함)

제11조제1호 중 “10%공제”를 “10%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천등”을 “우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를 “제7조”로, “공개 할”을 “공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별표 3 중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을 “(제10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 ----- -----.
제5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생략) <u><신 설></u>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
시 또는 국가의 행사: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전액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
육행사, 성북구체육회에 등록
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전액
4.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
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
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
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
대한 자

3. 지나친 음주·흡연·취사 행
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전액 감면-----
-----.

1. -----
----- 행사
2. -----

----- 한함)
3. -----
----- 서울특별시 성북구체
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 체육행사

<삭 제>

5.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100분의 50 (다만,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 : 100분의 30)

<삭 제>

6.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30

<삭 제>

7.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 : 100분의 20

<삭 제>

8. 장기 등록자(6월 이상), 가족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

<삭 제>

공 문화체육시설 포함) : 100
분의 5

9.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
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100분의 10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100분의
30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
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
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
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
육행사

2.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
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
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2. 100분의 50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다.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마.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3. 100분의 30

가.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
클럽(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
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200시간 이
상의 자원봉사증 소지자

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
급 발전을 위한 행사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
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4. 100분의 20: 경로우대자, 청
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
램 제외)

5. 100분의 10

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
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
하의 여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
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③ 삭 제 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u>10%공제</u>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	<u>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u> 6. 100분의 5 <u>가. 장기 등록자(6개월 이상)</u> <u>나.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u> <u>다.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 공 문화체육시설 포함)</u> ④ ----- 「소 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 -----. 1. ----- ----- ----- ----- <u>10% 공제</u> ----- ----- -----
---	---

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과 <u>우천</u>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u>소비자기본법</u> <u>시행령</u>」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생략)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u>공개</u> 할 수 있다. <u><신 설></u>	----- ----- --. 2. ----- <u>우천 등</u>----- ----- ----- 3. ----- ----- ----- ----- -- 「<u>소비자기본법</u> <u>시행령</u>」 <u>제8조에</u> ----- ----- -----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7조</u>----- ----- ----- ----- -- <u>공개할</u> -----. ④ <u>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u>
---	---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별표 3] <신설 2022.12.30.>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감면대상(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명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별표 3] <신설 2022.12.30.>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감면대상(제10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법률명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